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1995. 11. 7. 제정

2024. 2. 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종합적인 교원실적평가(이하 “교원종합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영역,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조(평가시기) ① 교원종합평가 시기는 「교원인사 규정」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의 11월 또는 5월로 한다. <개정 2014.7.3.>

②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시기로부터 매 1년 후에 평가한다.

③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11월 평가 대상자는 매년 11월에, 5월 평가대상자는 매년 5월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제3조(평가영역 및 교원의 계열구분) ① 교원종합평가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세칙에서 말하는 교원의 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9., 2023.10.24.>

1. 인문계열: 통역번역대학원, 신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과학대학, 사범대학(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호크마교양대학, 이화인문과학원 <개정 2014.7.3., 2017.11.16., 2022.6.17., 2023.10.24.>

2. 사회계열: 대학원(음악치료학과),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제외),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국제사무학과, 융합보건학과, 체육과학부),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자연계열), 뇌·인지과학부 제외) <신설 2023.10.24.>

3. 자연계열: 대학원(음악치료학과 제외),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신산업융합대학(식품영양학과), 간호대학,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자연계열), 뇌·인지과학부), 뇌융합과학연구원 <개정 2014.7.3., 2017.11.16., 2022.6.17., 2023.5.12., 2023.10.24.>

4. 공학계열: 공과대학, 인공지능대학 <신설 2023.10.24., 개정 2024.2.21.>

5. 의학계열: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신설 2023.10.24.>

6. 예능계열: 디자인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신산업융합대학(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교목실 <개정 2014.7.3., 2017.11.16., 2023.10.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내용의 특성상 다른 계열의 평가방식을 적용받기 원하는 교원은 신규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서식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열구분의 특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교원의 세부 구분) ① 제3조제2항의 교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원종합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1. 통역번역대학원: A교원, B교원, C교원
2.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 에코과학
3.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계획, 건축설계 <개정 2024.2.21.>
4.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일반, 외식/급식경영
5. 의과대학: 기초의학, 임상
6. 약학대학: 약학일반, 임상약학, 사회약학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해당 교원의 세부 전공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14.7.3.>

제4조(교원종합평가점수의 산정) ① 교원종합평가점수는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각 영역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2 장 연구실적평가

제5조(평가대상연구실적) ① 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은 11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5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발표된 것으로 하며,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연구실적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21.1.16.>

② 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당시에 최종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기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실적물을 평가대상기간 최종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평가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누락된 연구실적은 당해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바로 다음의 평가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중복평가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실적평가의 대상) 연구실적의 평가는 논문·저서·기타 이 세칙이 정하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되,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교원 및 학문분야의 특성상 특별히 인정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각종발표 등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제8조(공동연구실적의 평가) ① 공동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그 기여율에 따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연구자로 구분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제1저자(first author)를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개정 2014.7.3.>

② 공동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실적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4.7.3., 2023.10.24.>

1.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 가. 총 연구자 수 2인: 70%
- 나. 총 연구자 수 3인: 50%
- 다. 총 연구자 수 4인: 40%
- 라. 총 연구자 수 5인 이상: 30%

2. 공동연구자

- 가. 총 연구자 수 2인: 30%
- 나. 총 연구자 수 3인: 25%
- 다. 총 연구자 수 4인: 20%
- 라. 총 연구자 수 5인: 15%
- 마. 총 연구자 수 6인 이상: 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S급, 국제 특A급 논문 실적에 대한 기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경우 70%, 공동연구자의 경우 50%로 산정한다. <개정 2013.7.4., 2023.10.24.>

④ 국제급 논문으로서 총 연구자 수가 10인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는 연간 10편까지만 인정한다. <2018.11.21., 2023.10.24.>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서 및 학술대회발표의 경우에는 연구실적점수를 총 연구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학술대회발표의 경우 총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인 실적에 대해서는 기여율 산정시 총 연구자 수를 5인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3.7.4.>

⑥ 공동연구실적의 총 연구자의 수에서 본교 소속 학생(이하 “보조연구원”이라 한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레지던트를 포함한다)은 제외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이때 보조연구원은 해당 실적의 연구자 정보에 소속 학교가 본교로 명시된 경우에만하여 보조연구원으로 본다. <개정 2013.7.4., 2015.10.26., 2018.11.21., 2023.10.24.>

제9조(학술지 논문의 평가) 학술지 논문의 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3., 2016.3.31., 2018.11.21., 2021.12.17., 2023.5.12., 2023.10.24.>

제10조(신규임용 교원의 학술지 논문 실적평가) 교원이 신규 임용된 지 1년 이내에 발간된 논문으로서 그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기관은 본교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점수의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저서 등 및 산학협력의 평가) ① 저서 등의 평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 2016.3.31., 2018.11.21., 2021.12.17., 2023.10.24.>

②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21.1.16., 2021.12.17., 2022.2.25., 2023.10.24.>

제12조(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및 특수 연구분야의 실적 평가) ①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의 작곡발표, 연주, 전시, 공연 또는 기타 창작발표의 경우에는 팜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목적과 의도, 개념, 구성, 연구과정 등을 발표자 자신의 설명으로 체계화하고 당해 부문에의 공헌도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2.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시공간을 달리하여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연작 및 시청각적으로 그 차이가 미미한 창작물인 경우 창작물 간의 차이와 그 예술적 의미를 밝힌다.
3. 조형예술 부문 중 국외전(개인전·단체전) 및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구 과정 결과물(슬라이드·비디오·포트폴리오), 사회의 공헌도 등을 체계화하여 설명한다.
4. 음악 부문 중 지방 및 국외 연주의 경우 연구 결과물(비디오, CD, DVD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1.>

②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의 창작 및 발표 연구실적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8.11.21., 2021.12.17., 2023.10.24.>

③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교원의 실적을 평가할 때에 이론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이론교수”라 한다)의 공연(실기)실적, 또는 실기를 전담하는 교원(이하 “실기교수”라 한다)의 논문이나 저서 실적에 대하여는 상호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④ 건축설계를 전공한 교원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4.>

⑤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의 통역번역부문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통역번역대학원 C교원의 번역서에 대한 평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4.7.3., 2023.10.24.>

제13조(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교원이 승진하기 위하여는 별표 9가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7.11.16., 2018.11.21., 2022.6.17., 2023.5.12., 2023.10.24., 2024.2.21.>

제14조(보직 교원 등의 연구실적평가 특례) ① 교내 보직 교원은 재임기간 중 취득 연구실적 점수에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한다.

1.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100%
2. 부학(원)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50% <개정 2014.9.26.>
3.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30%
4. 기타: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40% 이내 <개정 2021.1.16.>

②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의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보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소숫점 아래는 버린다.

제15조(연구실적점수의 가감) ① 각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실적에 대해 제1항이 정하는 점수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점수를 가감한 후 공동연구실적의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제16조(특별연구점수) 교육·봉사 실적과 연계한 특별연구점수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1.]

제17조(연구실적점수의 환산)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18.11.21.]

제 3 장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

제18조(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3., 2015.10.26., 2016.3.31., 2017.11.16., 2018.11.21., 2021.12.17.>

제19조(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9.26., 2015.10.26., 2017.11.16., 2018.11.21., 2021.12.17., 2022.2.25., 2023.10.24.>

제20조(평가대상 기간) ①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기간은 11월 평가자는 전년도 2학기 와 당해 연도 1학기, 5월 평가자는 전년도 1, 2학기로 한다. 다만, 일부 봉사실적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 2018.11.21., 2021.1.16.>

② 신규임용 교원은 임용일자 이전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6.>

제21조(연구년 및 휴직교수의 평가) ① 1년 또는 반년 연구년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책임 수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2018.11.21.>

③ 연구년 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당 각 12.5점의 교육실적점수 및 봉사실적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5.11.27., 2018.11.21., 2023.10.24.>

④ 휴직교수의 경우는 「교원인사 규정」제43조제1항의 제2호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구년 교수에 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4.1.29.>

제22조(기타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부 칙(1995. 11. 7 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미술 및 무용발표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누적된 연구점수는 이 세칙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④(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의 교육 및 봉사실적점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한 1년에 1.00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⑤(경과규정) 1995년 2월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세칙 시행 후의 최초 직위 또는 직급 승진시에 한하여 교원의 연구실적점수와 교육 및 봉사실적점수를 상호 대치할 수 있다.

부 칙(1998. 8. 5 전문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말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 4 개정)

이 세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0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학년도 제1학기 및 2003학년도 제2학기 승진 및 재임용 해당 교원에 대하여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2. 6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의2 제4항에 의한 교육·봉사점수의 연구실적점수로의 전환은 2003년 3월 1일 이후에 평가되는 교육·봉사점수에 한한다.

부 칙(2003. 6. 24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5 전문개정)

제 1 조 (시행일) ①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8년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학술지등급·계열구분 등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이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실적점수는 이 세칙에 의한 교원종합평가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이때 교원종합평가점수는 종전에 취득한 교육·봉사실적점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연구실적점수에 대해서만 대학(원) 연평균 연구실적승진소요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하며, 교원종합평가점수 50점을 가산한다.

②2009년 1월 및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종합평가점수 30점을, 2010년 1월과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종합평가점수 15점을 가산한다. 다만,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이 승진하기 위하여는 200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와 제13조 관련 별표 9가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각각의 당해 직위·직급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산정하되 소숫점 아래는 버린다.

④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은 제외한다)이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9. 4. 21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대상)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5]는 2009년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1]은 2010년 1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 16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6 개정)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1]의 경우는 2011년 1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15 개정)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부 칙(2013. 7. 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별표 1,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2조제2항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제4항 별표 7, 제5항 별표 8, 제13조 별표 9, 제16조 별표10, 제17조 별표 11은 2014년 1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3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5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2015년 11월 및 2016년 5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종합평가점수(교육·봉사실적) 15점을 가산한다.

②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하여는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직위·직급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개정 전의 연구실적 의무편수와 개정 후의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의무편수 산정시에는 2008. 4. 25. 개정 세칙에서 정한 의무편수(2008. 4. 25. 세칙 개정 후 신설된 전공(학과)은 최초 신설한 의무편수)에 대하여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고, 이후 개정된 의무편수에 대하여는 소수 아래를 버린다.

④이 세칙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하여는 개정 후의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직위·직급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소수 아래를 버린다.

⑤이 세칙 시행 전에 재직 중인 교원이 당해 직위·직급에서 최초 승진·승급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11월 평가자는 12월 31일, 5월 평가자는 6월 30일까지의 게재예정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승진·승급이 지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4. 9.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별표 11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별표 3, 제12조제2항 별표 4, 별표 5, 제13조 별표 9, 제16조 별표 10, 제17조 별표 11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7.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제19조제3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연구년 개시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3. 3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6년 5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7. 11. 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9조 [별표1]의 학술지 논문의 등급 구분, 제11조 [별표 2], 제12조 [별표 6], 제13조 [별표9] 및 제18조 [별표 10]의 초과강의와 영어강의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1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 1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5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2. 2. 25.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5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22. 6. 17.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12.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1의 2. 다 항목 단서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1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부 칙(2023. 10. 24.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년 11월 및 2024년 5월 실적 평가 대상 교원 및 승진·승급 대상교원에 대하여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13조 관련 별표9가 정하는 의무편수 환산기준은 승진·승급 시점의 기준에 따르고, 공동책임 실적에 대한 책임저자 의무편수 산정은 해당 실적의 평가시점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은 제외한다)이 제3조 제2항의 개정으로 계열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은 사회계열로, 사회계열은 인문계열로, 의학 및 공학계열은 자연계열로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24. 2. 21. 개정)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술지 논문의 평가기준(제9조 관련)

1. 학술지 논문의 등급 구분

<개정 2014.7.3., 2018.11.21., 2021.12.17., 2023.10.24.>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비고
국제 논문	국제 S급	600점	600점	Nature, Science, Cell 또는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5%
	국제 특A급	500점	50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15%
	국제 A급		40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25%(A&HCI는 SJR의 Q1)
	국제 B급	300점	20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50%(A&HCI는 SJR의 Q2)
	국제 C급	200점	15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75%(A&HCI는 SJR의 Q3)
	국제 D급	150점	12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SCOPUS	150점	100점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기타 국제	60점	40점	기타 국제학술지(심사과정필수), 기념논문집·공동집필단행본 논문집에 게재된 국제논문
국내 논문	국내 A급	100점	7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국내 B급	60점	3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기타 논문	30점	20점	기타 국내 학술지, 기념논문집, 공동집필단행본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	SCOPUS등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40점	40점	SCOPUS 등재 학술대회 Proceedings에 수록된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	20점	20점	발표자 구성이 5개국(한국 포함)이상인 국제 학술대회에서 강연 및 발표된 논문(Proceedings포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국내학술대회 발표	10점	10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에서 강연 및 발표된 논문(Proceedings포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학술지 논문 평가시 세부사항

- 가.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하 “교내지”라 한다. 다른 대학의 교내지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위 1.의 학술지 논문의 등급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적은 원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전공 (학과)별 학술지 목록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 다. 학술지 논문의 평가 등급은 평가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대상 교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SCIE, SSCI 또는 A&HCI 논문에 한하여 평가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7.3., 개정 2021.12.17., 2023.5.12.>
- 라.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총 점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있는 경우는 40점까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SCOPUS 등재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총 점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7.4., 2018.11.21.>
- 마. 국제학술대회 기초연설급 초청강연(30분 이상)은 국제학술대회 발표와는 무관하게 1건당 1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4.7.3.>

[별표 2] 저서 등의 평가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저서 등의 등급 구분

<개정 2013.7.4., 2023.10.24.>

구분		배점	비고
학술서	국제학술서 A급	500점	해외 우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서로 학술서의 등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국제학술서 B급	400점	
	기타 학술서	300점	
전공서	전공서 A급	200점	각 해당 계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으로 우수한 전공서
	전공서 B급	100점	전공서 A급을 제외한 전공서 또는 학부 교재 전공서
번역서	외역서, 국역서 A급	150점	각 해당 계열의 전문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
	외역서, 국역서 B급	70점	번역서 A급을 제외한 번역서 또는 학부 교재 번역서
학술서의 Chapter	국제학술서 A급 Chapter	100점	학술서의 등급 구분과 동일하며 Chapter별 저자명 기재 필수, 동일 단행본에 대하여 A급 100점, B급 80점, 기타 40점 까지만 인정
	국제학술서 B급 Chapter	80점	
	기타 학술서 Chapter	40점	
전공서, 번역서의 Chapter		30점	Chapter별 저자명 기재 필수, 동일 단행본에 대하여 최대 30점 까지만 인정하며, 번역서의 경우 최대 21점까지 부여 가능
기타 저서	검인정 교과서	50점	
	일반서(교사지도서, ICT 자료, 어학교재, 교양도서)	30점	
	연구보고서	20점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하는 최종 연구보고서(ISBN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저서 등의 평가시 세부사항

가. 학술서, 전공서, 번역서, 일반서는 해당 교원의 전공분야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7.4.>

나. 전공서A급이나 B급 도서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도서는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대 5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평가 받은 저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가시기에 최대 5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평가지 가산점 부여된 경우 50점에서 기부여된 가산점을 제외하고 부여할 수 있다.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공저자수로 나누어 부여한다. <개정 2013.7.4.>

다. 삭제 <개정 2014.7.3., 2023.10.24.>

라. 개정판(검인정교과서는 제외)은 개정 비율과 초판의 평가점수를 참작하여 평정하되, 그 평가점수는 초판평가 점수의 3분의 1(학술서의 경우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개정 비율은 개정된 부분의 분량, 개정의 정도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0.24.>

마. 위 1.의 저서 등의 등급 구분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평, 논평, 편저 등은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의 내용에 따라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문예창작집은 전공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용어사전은 전공서로 평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3.7.4.>

사. 전공서 B급에 해당되더라도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공서 A급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저서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7.4., 개정 2014.7.3.>

자. 번역서를 감수한 경우에는 해당등급 및 해당분량 번역 평가점수의 20%의 점수를 부여하며, 번역서의 감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20%를 감한다. <신설 2018.11.21.>

[별표 3] 산학협력 실적의 평가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개정 2015.10.26., 2021.1.16., 2021.12.17., 2022.2.25., 2023.10.24.>

1. 산학협력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2015.10.26., 2021.1.16., 2021.12.17., 2022.2.25., 2023.10.24.>

구분		배점(계열 공통)
특허등록	국제	120점
	국내	80점
실용신안등록		60점
기술이전		10점 이상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SW 기여	20점
	SW 프로그램 등록	20점
교원 창업	자회사 신규 창업	30점
	비자회사 신규 창업	15점
산업체 연구비 수주		5점~15점
산업체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		5점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10점
기타 산학연계 활동	기술/경영 자문	5점
	공동장비 활용	5점

2. 산학협력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개정 2013.7.4., 2021.1.16., 2021.12.17., 2022.2.25., 2023.10.24.>

- 가. 등록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 또는 출원중인 실적에 대하여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나.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점수를 부여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실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발명자 총 수로 나눈다. 다만, 발명자 중 학생은 소속 학교가 본교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 총 수에서 제외 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24.>
- 다.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국제와 국내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한 경우에는 국제특허는 100점, 국내특허는 60점, 실용신안은 30점으로 한다.
- 라. 기술이전 점수는 여입금액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하며, 점수배점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7.4.>
- 마. 삭제 <2015.10.26.>
- 바. 소프트웨어는 SW교육총괄본부장이 인정하는 실적에 대하여만 점수를 부여하며,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6.>
- 사. 교원 창업은 교원창업심의회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고, 창업 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7.>
- 아. 산업체 연구비 수주 점수는 학교에 여입된 개인지분금액에 따라 5점 단위로 연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며,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5.>
- 자. 산업체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 점수는 연구과제 협약 금액에 따라 부여하며,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5.>
- 차. 현장실습교과목은 본교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2.2.25.>
- 카. 기타 산학연계 활동은 건당 5점을 부여하며, 총 점수는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산학연계 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5.>

[별표 4] 음악부문 실적 평가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개정 2015.10.26., 2021.12.17., 2023.10.24>

1. 음악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2023.10.24.>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 고
독주·독창회	독주·독창회	60분 내외	100점	대학(원)장은 전공(또는 학과)교수회 및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주(공연) 장소의 등급을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의 구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에 대하여 각각 A급은 100%, B급은 80%, C급은 60%의 점수를 부여한다.
	듀오	60분 내외	50점	
실내악	실내악(2~10중주)	60분 내외	40~50점	
협 연	국내외 유수 교향악단	30분 내외	60점	
	국내외 유수 실내악단	20분 내외	50점	
	2~4인 연주	20분 내외	30점	
지 휘	국내외 유수 교향악단, 전문합창단, 전문실내악단	전체프로그램	60점	
	아마추어합창단, 학생(대학) 교향악단·합창단	전체프로그램	20~30점	
오페라 출연	국내외 유수 오페라	주연	100점	
		조연	40점	
	국내외 유수 소규모 오페라	주연	60점	
		조연	20점	
연 출	국내외 유수 오페라		100점	
	국내외 유수 소규모 오페라		60점	
작곡 발표회	개인 작곡발표회	60분 내외	100점	
	오페라, 무용음악	30분 내외	100점	
		교향곡 등 대규모 편성		15분 내외
	실내악	10분 내외	70점 (한국음악30점)	
	합창곡	5분 내외	20점	
	무반주 독주기악곡	5분 내외	30점 (한국음악20점)	
	가곡	5분 내외	20점	
	편곡	대규모	10점	
소규모		5점		
반 주	기악·성악	60분 내외	25~30점	
부분연주	전체 연주회의 한 프로그램 참여 (독창, 독주 등)	15분 내외	10~20점	
음 반			해당점수의 60%	위의 각 평가항목 해당 점수의 60%를 부여한다. 또한 위의 각 평가항목으로 평가받은 연주회의 실적 녹음은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음악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가. 해외에서 실시된 연주는 유수 공연장에서의 연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연주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연주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 동일한 곡목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연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년 후 재연주일 경우에는 80%로 평가한다. 다만, 독주회·독창회 또는 개인 작곡발표회의 경우 발표곡 중 50% 이상이 신작 또는 초연인 경우 신작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7.3., 2015.10.26., 2021.12.17.>

라. 삭제 <2009.4.21.>

마. 신작발표는 연주, 출판, 출판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바. 공연예술대학원 소속 교원은 컴퓨터음악작곡, 레코딩, CD·DVD·뮤직비디오 제작, 영상음악(영화음악, 애니 메이션, 광고 음악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실적물은 학문적 비중 및 기여도에 따라 10~100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0.3.16.>

[별표 5] 조형예술부문 실적 평가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개정 2015.10.26., 2023.10.24.>

1. 조형예술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5.10.26., 2023.10.24.>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등급별 배점						비고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전시회	개인전	1. 세계적인 최상위권 국제미술제 또는 미술관의 기획초대전	등급 구분 없이 300점						전시 장소의 등급과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등급은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 국제적 또는 동등한 수준의 미술관 규모의 특별 기획 개인전	등급 구분 없이 150점						
		3. 전문화랑	120점	100점	80점				
	기획 초대전	1.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 초대전	70점	50점	30점				
		2. 전문화랑 규모의 기획초대전	40점	30점	20점				
	일반 단체전, 아트페어	30점	20점	10점					
전시 기획	국제	국제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시 기획전	등급 구분 없이 100점						디자인 프로젝트의 등급은 용역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국내	전문화랑 규모의 기획전	80점	60점					
디자인 프로젝트	국제		200점	150점	100점	60점	40점		
	국내		120점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2. 조형예술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 가.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문화재단, 문예진흥원, 미술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 등을 말한다.
-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전시 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전시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 다. 2인전의 경우에는 개인전에 준하는 점수의 1/2로 하며, 3인 이상의 전시는 단체전으로 간주한다.
- 라. 학교에 여입되지 아니한 디자인 프로젝트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독 연구라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인력(학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70%만 인정한다.
- 바. 삭제 <2015.10.26.>
- 사. 모든 작품은 신작에 한하여 점수 인정되며, 구작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4., 개정 2023.10.24.>

[별표 6] 무용부문 실적 평가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1. 무용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2018.11.21.>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등급별 배점			비고
			A급	B급	C급	
개인발표회		60분 이상	150점	120점	90점	개인이 기획, 감독, 안무를 모두 담당하여 발표된 공연
안무	개인안무	30분 이내	90점	70점	50점	안무자 개인이 무용작품 전체를 안무하는 것.
		60분 이내	120점	100점	80점	
	공동안무	30분 이내	90점	70점	50점	무용작품 하나를 여러 명이 안무하는 것(개인안무점수를 안무자 수로 나눔)
		60분 이내	120점	100점	80점	
	재구성 및 재안무	30분 이내	50점	40점	30점	초연 후 3년이 지난 작품으로 안무했던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동일 작품은 연 1회에 한하여 평가함).
		60분 이내	80점	70점	60점	
	각종공연 및 야외공연안무	30분 이내	30점	20점	10점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에 필요한 무용 안무
		60분 이내	50점	40점	30점	
출연	독무		80점	70점	60점	
	3인 이상 군무		50점	40점	30점	
무용예배	안무		90점			본교 대강당 채플 공연(창작품에 한함)
	재안무 및 재구성		50점			
예술감독		60분 이상	60점	50점		One stage(공연 전체) 60분 이상의 A, B규모 극장에 한함(연 1회에 한하여 평가함)

2. 무용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 가. 공연장소의 등급은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공연 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공연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 다. 개인발표회는 연 1회 공연에 한한다.
- 라. 순회공연안무는 위에 제시한 종별 및 평가내용 공연장소 규모에 준하여 첫 1회 공연만 평가한다.
- 마. One stage(공연 전체) 안무는 전체 공연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8.11.21.>

[별표 7]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기준(제12조 제4항 관련)

1. 건축설계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종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 설계경기 및 턴키 (실현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설계경기)	(1) 현상설계 및 턴키 1위 당선	170점	(4)는 국제적인 창작활동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2) 현상설계 3위 이내 입상	140점		
	(3) 현상설계 및 턴키 입상	120점		
	(4) 현상설계 및 턴키 출품안	70점		
나. 공모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설계공모)	(1) 공모전 1위 당선	150점	1. (4)는 국제적인 창작활동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2. (4) 내지 (6)에 의해 취득한 점수는 1년에 총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5) 내지 (6)은 지도학생이 응모전에 작품지도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모전 3위 이내 입상	120점		
	(3) 공모전 입상	80점		
	(4) 공모전 출품 안	60점		
	(5) 설계 지도학생작품 공모전 3위 이내 입상	30점		
	(6) 설계 지도학생작품 공모전 입상	20점		
다. 프로젝트	(1) 도시구상 및 마스터플랜 관련 프로젝트	100점	1. (2)의 시공된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계획프로젝트로서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점수를 감한다. 2. (4)는 배점 범위 안에서 10점 단위로 산정한다. 3. (4)는 실현된 가구·무대·전시 디자인, 환경설치물 및 이와 유사한 범주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2) 건축설계	계획 프로젝트		60점
		시공된 프로젝트		120점
	(3) 실현된 실내디자인 프로젝트	80점		
(4) 실현된 공간 및 환경 관련 3차원 디자인 결과물	40~80점			
라. 건축 및 디자인 전문잡지 게재	(1) 해당전문지가 설계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 형식 또는 이와 동등한 비중으로 2개 이상의 작품이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게재된 경우	종별 해당 점수의 1.5배	전문잡지에 게재된 실적의 내용이 이미 종별 '가', '나', '다'의 기준에 따라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잡지 게재 점수에서 이미 받은 각 해당 점수를 감한다.	
	(2) 해당전문지에 각종 도면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작품	종별 해당 점수의 1.3배		
마. 전시	(1) 개인전	120점	관련 학협회 및 동등한 수준의 기관, 단체의 초대작가전 기타 관련 단체의 기획초대전	
	(2) 그룹전 (2~10인)	80점		
	(3) 단체전 (11인 이상)	50점		
	(4)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작품	A등급		70점
B등급		50점		

2.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가. 국제적인 창작활동이란 종별 가, 나, 라 및 마의(4)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국내기준 점수에 100%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3.7.4.>

나. 삭제 <2010.3.16.>

다. 건축설계 공동 연구실적에 대한 기여율은 설계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단독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5인 이상
기여율	100%	80%	70%	50%	30%

라. '건축 및 디자인 전문잡지'라 함은 국제급은 Columbia University의 Avery Index에 명시된 저널, 국내급은 건축문화, Plus, 와이드, 건축세계, MARU, Dlle, Interiors, lw(interior world), Bob, The Plan, Public Art, Concept 를 말한다. <개정 2013.7.4.>

마. 기타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6.>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별표 8] 통역번역부문 실적 평가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1. 공통사항: 통역번역대학원 C교원의 통역실적 및 번역실적 점수는 연간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7.3., 개정 2023.10.24.>
2. 통역실적 평가기준: 통역실적은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실적 건수별로 5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3.7.4., 2023.10.24.>
 - ①삭제 <신설 2013.7.4., 개정 2023.10.24.>
 - ②삭제 <개정 2013.7.4., 2023.10.24.>

3. 번역실적 평가기준 <개정 2013.7.4., 2023.10.24.>

구분		세부내용	배점
번역서	A급	중요 문인의 저작, 인문·사회·자연과학 중요 도서, 국내 저작의 해외 출판	150점
	B급	150쪽 이상의 일반도서	100점
	C급	150쪽 미만의 일반도서	70점
번역물	학술논문, 평론, 문학텍스트, 영화/연극자막, 광고/홍보/마케팅 카피매뉴얼 등의 실무번역 A4 1쪽당		1점

- ①번역물은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것에 한하여 A4 용지 25행 1쪽을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7.4., 2023.10.24.>
- ②번역서 및 번역물을 감수한 경우에는 해당등급 및 해당분량 번역 평가점수의 20%의 점수를 부여하며, 번역서의 감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20%을 감한다. <개정 2013.7.4.>

[별표 9] 승진·승급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등(제13조 관련) <개정 2014.7.3., 2015.10.26., 2022. 6.17., 2023.10.24., 2024.2.21.>

1. 공통사항

가. 다음 승진·승급 의무편수에서 말하는 학술지 논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 A급 이상: [별표 1]의 국제 S급, 국제 특A급, 국제 A급
- (2) 국제 B급 이상: (1) 및 [별표 1]의 국제 B급
- (3) SCIE급: (2) 및 [별표 1]의 국제 C급과 국제D급
- (4) SCOPUS급 이상: (3) 및 [별표 1]의 SCOPUS
- (5) 재단 등재급 이상: (4) 및 [별표 1]의 기타 국제와 국내 A급

나. 승진·승급 의무편수 산정시 학술지 논문 구분에 따라 게재 논문 1편에 대하여 최대 6편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3.10.24.>

논문 구분 (1편)	환산 편수	국내 A급	SCOPUS	국제 B급 국제 C급 국제 D급	국제 특A급 국제 A급	국제 S급
국제 S급	6편	6편	5편	4편	2편	1편
국제 특A급 국제 A급				2편	1편	
국제 B급 국제 C급 국제 D급	4편	4편	2편	1편		
SCOPUS	2편	2편	1편			
국내 A급	1편	1편				

※ 저서의 경우 단독 저서에 한하여 학술서, 전공서 A급, 외역서 A급, 국역서 A급 각 1편을 국내 A급 1편으로 간주함

다. 인문계열(통역번역대학원 A,B교원 제외), 사회계열(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의과대학 사회계열,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전공 제외), 공학계열 건축학과(건축계획), 예능계열 중 학술지논문 기준을 선택한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연구실적 의무편수 중 1편 이상의 책임저자 SCIE급 논문 또는 2편 이상의 책임저자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칙(2014.7.3. 개정) 제2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의무편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2편 이상의 책임저자 SCOPUS 논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0.24., 2024.2.21.>

라. 위 다.의 사항에 대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전공(학과)은 소속 대학(원)장을 통하여 면제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면제가 승인된 전공(학과)의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의무편수 이외에 2편의 책임저자 재단등재급 이상의 논문을 추가로 게재함으로써 위 다.의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마. 공동책임 실적에 대한 책임저자 의무편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보조연구원은 책임저자 수에서 제외한다.

- 1. 책임저자 수가 2인인 경우: 0.7편
- 2. 책임저자 수가 3인인 경우: 0.5편 <개정 2023.10.24.>
- 3. 책임저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0.3편 <개정 2023.10.24.>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 4. 국제S급, 국제 특A급 논문은 책임저자의 경우 0.7편, 공동저자의 경우 0.5편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5.10.26., 개정 2023.10.24.>
- 5. 인문계열·사회계열·예능계열의 경우 국제A급 이상 논문은 공동저자 2편을 책임저자 1편으로, 국제 B, C, D급 논문은 공동저자 3편을 책임저자 1편으로 SCOPUS급 논문은 공동저자 4편을 책임저자 1편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0.24.>
- 바. 이 세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계열특례가 허용된 교원의 승진·승급 의무편수는 특례가 허용된 계열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간과 연계하여 조정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아래와 같다(교원인사규정 제 18조제10항 관련).

2. 승진·승급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등

가. 인문계열 <개정 2023.10.24.>

(1) 인문계열 전체(통역번역대학원 A,B교원 제외)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7	6	8	8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 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15.10.26., 2023.10.24.>

(2) 통역번역대학원(A교원)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1+ 통번역 실무	2	2	2

※ 통번역실무는 통역은 A급 통역 4회 이상, 번역은 A급 번역물 50쪽 이상을 의미함

※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통번역 관련 수주실적 또는 국제회의 유치 실적을 국내 A급 1편~2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함

(3) 통역번역대학원(B교원) <개정 2023.10.24.>

선택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를 선택하는 교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추가로 부과한다.

(가)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2	2	2	2

※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통번역 관련 수주실적 또는 국제회의 유치 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1편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함

(나)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3	3	3	3

※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통번역 관련 수주실적 또는 국제회의 유치 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실적은 1편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함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나. 사회계열 <신설 2023.10.24.>

(1) 사회계열 전체(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의과대학 사회계열, 스크랜튼대학 국제학전공 제외)

<신설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7	6	8	8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3.10.24.>

(2)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스크랜튼대학 국제학전공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OPUS급 이상	3	2	3	3

(3) 의과대학(사회계열)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SCIE급	6(3)	6(4)	6(3)	6(3)

※ 괄호 안은 책임저자 연구실적 편수임

다. 자연계열 <개정 2023.10.24.>

(1) 대학원 생명·약학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생명과학)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국제A급 이상	3	3	5	5

(2) 대학원 에코과학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에코과학) <개정 2015.10.26., 2017.11.16., 2022.6.17., 2023.5.12.,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4(2)	4(2)	6(2)	6(2)

※ 괄호 안은 국제B급 이상 논문임

(3)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및 통계학과,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자연계열)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3(1)	3(1)	5(2)	5(2)

※ 괄호 안은 국제B급 이상 논문임

(4)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및 화학·나노과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

<개정 2015.10.26., 2017.11.16., 2022.6.17.,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6(2)	5(2)	8(2)	8(2)

※ 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5)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및 수학교육과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3(1)	3(1)	4(1)	4(1)

※ 괄호 안은 국제B급 이상 논문임

(6)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식품영양일반)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4(1)	4(1)	5(2)	5(2)

※ 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7)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외식/급식경영)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6(1)	5(1)	7(2)	7(2)

※ 괄호 안은 SCIE급 논문임 <개정 2023.10.24.>

(8) 간호대학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3	4	5	5

※ 승진·승급시 '교수현장실습'에 대한 의무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함

라. 공학계열 <신설 2023.10.24.>

(1) 공과대학(환경공학과 및 건축학과 제외) <개정 2023.10.24., 2024.2.21.>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4(2)	4(2)	6(2)	6(2)

※ 괄호 안은 국제B급 이상 논문임

(2)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2024.2.21.>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5(1)	5(1)	7(1)	7(1)

※ 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3)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계획)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2024.2.21.>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6	5	7	7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 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3.10.24.>

(4)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설계)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2024.2.21.>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건축창작활동 (책임설계자) 및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논문	4	4	5	5

※ '건축창작활동'은 [별표 기의 '가'의 (1)~(3), '나'의 (1)~(3) 및 '다'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5) 인공지능대학 <신설 2023.5.12., 개정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5(2)	5(2)	7(2)	7(2)

※ 괄호 안은 국제B급 이상 논문으로 하되, 국제A급 이상 논문이 1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의학계열 <신설 2023.10.24.>

(1) 의과대학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SCIE급	기초의학 (분자의과학 제외)	12(6)	12(7)	12(7)	12(6)
	기초의학 (분자의과학)	14(7)	14(7)	14(7)	14(7)
	임상	6(3)	6(4)	6(3)	6(3)

※ 괄호 안은 책임저자 연구실적 편수임

※ 분자의과학 기초의학 교원의 경우 책임저자 연구실적 편수 중 2편 이상은 국제A급 이상이어야 하며, 분자의과학을 제외한 기초의학 교원의 경우 책임저자 연구실적 편수 중 2편 이상은 국제B급 이상이어야 함 <개정 2015.10.26.>

(2) 약학대학(약학일반)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국제B급 이상	7(2)	8(2)	10(2)	10(2)

※ 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3) 약학대학(임상약학) <개정 2015.10.26.,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3	5	6	6

(4) 약학대학(사회약학) <개정 2017.11.16., 2023.10.24.>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SCIE급	8	10	12	12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바. 예능계열 <개정 2023.10.24.>

(1) 예능계열 전체(음악대학 제외)

선택에 따라 (가), (나) 또는 (다)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 (나)를 선택하는 교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및 의류산업학과 교원은 (다)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가) 개인발표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개인 공연/전시	3	2	2	2

※ 의무편수 중 일부를 책임저자 KCI등재급 이상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17.11.16.>

(나) 학술지 논문(디자인프로젝트 포함)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KCI 등재급 이상	6(4)	5(4)	6(4)	6(4)

※ 괄호 안은 책임저자 연구실적 편수임

※ 디자인프로젝트 1건(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개인지분 3천만원 이상)은 KCI 등재급 1편으로 간주함 <개정 2017.11.16.>

(다) 학술지 논문 <개정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7	6	8	8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 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3.10.24.>

(2) 음악대학(무용과 제외)

선택에 따라 (가), (나) 또는 (다)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를 선택하는 교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추가로 부과한다.

(가) 개인발표 A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개인 공연/전시	3	2	2	2

※ 의무편수 중 일부를 책임저자 KCI등재급 이상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17.11.16.>

(나) 개인발표 B <개정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개인 공연/전시	4	3	3	3

※ 의무편수 중 일부를 책임저자 KCI등재급 이상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17.11.16.>

(다) 학술지 논문 <개정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7	6	8	8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 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3.10.24.>

(3) 음악대학 무용과

선택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를 선택하는 교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추가로 부과한다.

(가) 개인발표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개인발표회	6(3)	5(2)	6(2)	6(2)

※ 괄호 안은 A급, B급 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회임

※ 의무편수 중 일부를 책임저자 KCI등재급 이상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17.11.16.>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나) 학술지논문 <개정 2015.10.26., 2017.11.16.>

구분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C	교수C→ 교수B	교수B→ 교수A
책임저자 KCI 등재급 이상	7	6	8	8

※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C, 교수C에서 교수B, 교수B에서 교수A로 승진시 1편 이상의 SCIE 급 또는 2편 이상의 SCOPUS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23.10.24.>

[별표 10] 교육실적 평가기준표 (제18조 관련) <개정 2014.7.3., 2015.10.26., 2018.11.21., 2021.12.17.>

종별	배점	세부내용	비고
신교육방법개발 및 강의공개	과목당 10점	새로운 교육방법의 시도 및 개선 새로운 교양과목의 개발과 강의 담당	1. 교육혁신센터장이 인정하는 강의공개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50%이상 업데이트하여 다시 공개한 경우 최초 부여 점수의 1/2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과목당 10~20점	•본교 정규 교과목에 한하며, 전체 강의 중 5주차 이상의 동영상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 점수 부여 •5주차 이상 10주차 미만 공개의 경우 10점, 10주차 이상 공개의 경우 20점 부여	
	건당 2점	외부에 공개한 특강(교과목의 일부가 아닌 별도 특강)에 대하여 점수 부여	
강의우수 교원	30점	강의우수 교원 선정시 해당 연도에 점수 부여	
강의계획	학기당 5점	당해 학기 담당하는 모든 교과목(팀티칭과목 포함)의 강의계획안을 입력마감일 전까지 인트라넷에 입력한 경우 점수 부여	연구년 및 기타의 사유로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강의 규모	10명당 1점	책임시간으로 인정하는 교과목(3학점 기준)의 연간 교과목 수강인원 10명당 1점을 부여	1. 수강철회 종료 후 총 수강인원(교환학생 등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2. 3학점 이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 비율로 환산한다.
산학협력 교육활동	과목당 5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과목당 5점	기업가정신/창업교과목 운영	
	과목당 5점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목당 5점	계약학과/트랙 발굴 및 운영	

- ① 강의규모 점수는 연간 최대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7.3., 개정 2018.11.21.>
- ② 신교육방법 개발 및 강의공개 실적의 총 점수는 연간 최대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7.4.>
- ③ 해당 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한 경우,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점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신설 2014.7.3.>
- ④ 인문과학대학 및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교육실적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3., 2016.3.31., 2017.11.16.>
- ⑤ 산학협력 교육활동의 총 점수는 연간 최대 4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7.>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제19조 관련)

<개정 2014.9.26., 2015.10.26., 2018.11.21., 2021.12.17., 2022.2.25., 2023.10.24.>

종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보직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연간 90점	학기 단위로 점수 부여
	부학(원)장급		연간 70점	
	전공주임교수(학과장)급		연간 65점	
정부(공공) 연구비	계열별 정부(공공)연구비 여입금액 기준에 따라 5점 단위로 부여		연간 5~30점	
본부위원회 활동	정규위원회		연간 10점	1. 학기 단위로 점수 부여(1회 이상 활동한 위원회에 대해서만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위원회		연간 5~10점	
석박사 논문지도	석사	일반-전문대학원	1인당 4점	1. 정해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논문을 지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대학원	1인당 4점	
	박사		1인당 10점	
외부 학술봉사 및 수상			건당 10점	1. 국제학술지 및 학진등재(후보)지의 학회장, 편집위원장 2. 학술 관련 수상(국제, 정부, 학진등재(후보)학회 등 권위있는 학술단체) 3. 한국연구재단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선정 등 4. 외부단체 우수강의 선정 등 5.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협력 봉사	해외대학/연구소 등과의 학술협력 주도		건당 5~10점	1. 국제처장이 인정하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인솔 해외 프로그램운영		건당 5~10점	
	교한/방문학생 선발위원 활동(출제, 면접, 심사 등)		건당 5점	
	해외유학생, 교환 방문학생(학부) 지도		건당 5점	
	기타 국제협력 활동		건당 5점	
입시 관련 봉사	기획관리위원 및 예체능 관리위원		연간 15점	1. 수시, 정시, 편입학 등 정규 학부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출제위원(논술, 면접, 실기) 및 논술채점위원		건당 10점	
	실기 및 서류 전형 채점		건당 5점	
	감독 및 면접 위원		건당 3점	
대학(원) 활동	전공(학과)내 행사 참여 및 기여도 등		연간 5점 이내	1.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 활동'에 대한 평가대상 및 배점을 소속 교원에게 사전에 공개한다. 2. 연간 최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창업 지도		연간 10점 이내	
	대학(원)내 행사 및 위원회 활동, 기타 대학(원) 기여도 등		연간 15점 이내	
본부 관련 학생지도	본부 동아리 지도		연간 5~10점	1.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생지도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 관련 프로그램 지도		연간 5~10점	
진로 관련 봉사	진로 지도 및 상담		연간 20점 이내	1.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활동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국책사업 사업단장	소형과제	학기당 3점	
		대형과제	학기당 5점	
	본부 보직발령이 아닌 보직		학기당 5점	특수대학원 전공주임교수 등 유사 보직 또는 보직 점수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부)기관장 등의 활동
	겸임교원의 학생지도 활동		연간 5~10점	1. 겸임교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교내 겸임 교원의 학사활동 참여 및 학생지도 활동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연간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의무교육 참여		건당 5점 이내	
	학교에 대한 특별한 기여		건당 10~20점	

*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봉사실적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6.>